

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·관리 조례안

의안 번호	96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1. 11. 1.

발의자 : 박종욱 의원 외 2인

1. 제안이유

- 「문화재 보호법」 또는 「강원도 문화재보호 조례」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의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원 및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향토문화유적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적 보호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보호·관리위원회 설치(안 제3조~안 제9조)
 - 기능 : 향토문화유적 지정과 해제, 보호 및 관리 등
 - 구성 : 10명 이내(위원장 : 부군수)
 - 임기 : 2년
- 지정 및 해제(안 제10조~안 제13조)
 - 지정 :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유적으로 지정
 - 해제 : 지정 가치의 상실, 원형의 변형 또는 손실
 - 고시 : 지정·해제 또는 변경할 때에 그 내용을 고시

- 보호·관리 및 홍보(안 제14조~안 제17조)
 - 관리자지정 :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향토문화관리자로 지정
 - 보호·관리 : 안내판 설치 및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
 - 경비보조 : 문화유적의 보호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

3. 참고사항

-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관련법규 : 붙임참조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: 2011. 9. 26 ~ 10. 15(20일간)
 - 제출된 의견 없음
- 집행기관 의견수렴 : 제출된 의견없음

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·관리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적 보호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향토문화유적(이하 “문화유적”이라 한다)”이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「문화재보호법」 또는 「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」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, 예술적,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원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
2. 향토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
3. 향토문화, 토속,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
4.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·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

제2장 보호·관리위원회

제3조(설치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문화유적의 효율적 보호 관리를 위하여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·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문화유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.

1. 지정과 해제
2. 보호·관리
3. 환경보존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
-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문화유적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주사가 된다.

제6조(임기)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7조(해촉)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3장 지정 및 해제

제10조(지정)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문화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지정서 교부)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적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등에게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.

제12조(지정 해제)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군 지정 가치의 상실
2. 원형의 변형 또는 손실
3.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13조(고시) 군수는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유적의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하며,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4장 보호·관리 및 홍보

제14조(관리자 지정)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적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관리자(이하 “관리자”라 한다)로 지정한다.

② 군수는 소유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적에 대해 소재지 읍·면장 및 문화유적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15조(보호·관리) 문화유적의 보호·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2. 군수는 지정에 대한 안내와 보호 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.
3. 군수는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화유적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.

제16조(경비보조 등) ① 군수는 문화유적의 보호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문화유적의 보호·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
제17조(홍보) 군수는 문화유적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군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,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문화유적의 보호·관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규

□ 문화재보호법

○ 제2조(정의)

① 이 법에서 “문화재”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·

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

1. 유형문화재 : 건조물, 전적(典籍), 서적(書跡), 고문서, 회화, 조각,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
2. 무형문화재 : 연극, 음악, 무용, 놀이, 의식,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
3. 기념물 : 가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
 - 가. 절터, 옛무덤, 조개무덤, 성터, 궁터, 가마터,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큰 것
 - 나.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
 - 다. 동물(그 서식지, 번식지, 도래지를 포함한다), 식물(그 자생지를 포함한다), 지형, 지질, 광물, 동굴,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·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
4. 민속문화재 : 의식주, 생업, 신앙,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, 기구,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

○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
-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·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·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